

제 9 조

- (1)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적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고하는 때에 발효한다.
- (2) 이 양해각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. 이 양해각서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 전에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발생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유효하다.
- (3)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이 양해각서를 중료 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
이상의 증거로서, 하기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.

1991년 7월 4일 오라와에서 등등하게 정본인 영어,
불어 및 한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.

캐나다 정부를 위하여

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

Barbara McCaughey. 이상우